

국회사무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2006.9.26 국회사무처내규 제409호 전문개정
(타)개정 2009.4.28 국회사무처내규 제431호(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타)개정 2016.12.2 국회사무처내규 제583호(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2019.6.27 국회사무처내규 제639호
개정 2021.12.21 국회사무처내규 제687호
개정 2022.7.6 국회사무처내규 제70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사무처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회사무처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21>

② 위원장은 입법차장이 된다.<개정 2009.4.28>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국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국회사무총장이 위촉하는 5명으로 한다.<개정 2019.6.27, 2021.12.21>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이 된다.<개정 2009.4.28, 2016.12.2>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제6조제1항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의

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 및 의견요청)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견서) ①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서에는 정보공개여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1항의 의견서를 해당 정보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회의를 말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2.7.6>
<중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7.6>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견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

명날인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7.6>

제8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409호, 2006.9.2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제431호,2009.4.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의전과, 경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내규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의회외교정책과, 의회경호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의장비서실·부의장실에 근무하는 별정직 1급상당(비서관)은 별정직 1급상당(수석비서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홍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별정직 5급상당(자료조사관), 별정직 5급상당(촬영관), 별정직 6급상당(촬영요원) 및 별정직 7급상당(촬영요원)은 미디어담당관실에, 종전의 총무과에 근무하는 별정직 9급상당(교섭단체행정정보조요원)은 인사과에, 종전의 총무과에 근무하는 별정직 9급상당(행정보조요원)은 운영지원과에, 종전의 국회기록보존소에 근무하는 별정직 5급상당(헌정자

료담당) 1인과 별정직 6급상당(자료조사요원) 1인은 홍보담당관실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공무원 위탁교육훈련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회도서관은 기획협력국장,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관리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획협력관”을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획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국회사무처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과장과 교육훈련과장(교육훈련과장이 주무간사가 된다. 다만, 제2항 제3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인사과장이 주무간사가 된다)으로, 국회도서관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기획협력팀장으로 한다.

② 국회방위협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國會事務處總務課長”을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국회사무처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보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별표 중 국회정책기획위원회·국회조직관리위원회 및 국회홍보출판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회정책기획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행정법무담당관 인사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국회조직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행정법무담당관 인사과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홍보기획관	△ 홍보담당관 미디어담당관

④ 국회홈페이지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보관·감사관·방송기획관·기획관리관·기획협력관·총무과”를 “홍보기획관·감사관·방송기획관·기획관리관·인사과·운영지원과”로 한다.

국회사무처내규 제391호·국회도서관내규 제197호 및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4호 국회홈페이지 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 부칙 제2항 제5호 중 “총무과”를 “인사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회기록보존소”를 “홍보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입법정보실”을 “정보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획협력관”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⑤ 국회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보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별표 중 “공보관”을 각각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공보관실”을 “홍보기획관실”로 하고, “공보관”을 각각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공보관실”을 “홍보기획관실”로, “공보관”을 각각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공보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⑥ 국회사무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무차장”을 “입법차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회기록보존소장”을 “의정종합지원센터장”으로 한다.

부칙(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제583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국 소속 9급(운전) 1인의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까지, 운영지원과 소속 9급(후생) 1인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까지, 홍보기획관 소속 6급(기계 운영) 1인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까지, 관리국 소속 7급(행정) 1인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까지, 홍보기획관 소속 8급(취재보도) 1인의 경우에는 2021년 4월 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의정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내규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을 “국회민원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②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을 “국회민원지원센터

장”으로 한다.

③ 법제실 법률안 입안 및 검토 업무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국회민원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을 “국회민원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내규 시행당시 다른 법규에서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9호,2019.6.27>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2021.12.21>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22.7.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